

● 제332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3002)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병도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3002

I. 개정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이병도 의원 외 27명
- 나. 제 출 일 : 2025. 8. 11.
- 다. 회 부 일 : 2025. 8. 1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공동책임과 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,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.
- 이에, 상위법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모성권·부성권 보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,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25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모성권·부성권 보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음.

2 주요 내용 검토

가. 모성·부성의 권리 보장 신설(제25조의2)

1) 개정(안)의 내용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5조의2에 ‘모성·부성의 권리 보장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|---|
| <신설> | <u>제25조의2(모성·부성의 권리 보장)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|

2) 검토의견

- 신설되는 제25조의2는 양성평등기본법(이하 ‘법’) 제25조(모성·부성 권리보장)의 ‘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’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신설되는 조문에서는 ‘법’에서 명시한 모성·부성 권리보장의 주체인 ‘국가기관 등’을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으로 변경하였는데, 현행 조례 제20조(주요 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)에서는 ‘투자·출연기관’을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‘투자기관과 출연기관’으로 명시하고 있음.
 - 2011년 9월 제23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(의안번호 08-00378) 당시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한 바 있음(안 제5조).

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**“투자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.**
2. **“출연기관”이란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.**

- 신설 조문에서는 모성·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바,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인 ‘출연기관’에 대한 정의는 개정되는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제25조의 2를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 기관의 장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그런데, 본 조문에서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 기관의 장’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제20조의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는 2015년 폐지되었음.
- 이는 2015년 4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면서,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안의 제20조도 수정이 필요함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부칙<제5963호, 2015.7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- 이에 동 조례 제20조제1항의 근거조문을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

제20조(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, **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기관(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)**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·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정의에

따르면, “출자·출연 기관“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5조¹⁾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.

- 2025년 7월 22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(<https://www.data.go.kr>) 지방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,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은 총 16개임²⁾.

○ 또한, 제20조제1항에 명시된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

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

2.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·폐지·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

2) 서울특별시 출연기관

| 연번 | 출자출연 운영구분 | 기관유형 | 기관명 |
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출연기관 | 기타 | 120다산콜재단 |
| 2 | 출연기관 | 문화 | 서울관광재단 |
| 3 | 출연기관 | 문화 | 서울디자인재단 |
| 4 | 출연기관 | 기타 | 서울디지털재단 |
| 5 | 출연기관 | 문화 | 서울문화재단 |
| 6 | 출연기관 | 중소기업진흥 |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|
| 7 | 출연기관 | 문화 | 서울시립교향악단 |
| 8 | 출연기관 | 복지자원봉사 | 서울시복지재단 |
| 9 | 출연기관 | 여성·청소년 | 서울시여성가족재단 |
| 10 | 출연기관 | 신용보증 | 서울신용보증재단 |
| 11 | 출연기관 | 연구원 | 서울연구원 |
| 12 | 출연기관 | 의료원 | 서울의료원 |
| 13 | 출연기관 | 장학 | 서울장학재단 |
| 14 | 출연기관 | 복지자원봉사 |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|
| 15 | 출연기관 | 기타 |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|
| 16 | 출연기관 | 문화 | 세종문화회관 |

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더라도, 2011년 「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(의안번호 08-00378) 당시 조례 1항에서 명시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인 “투자기관”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음.

- 현행 조례 제22조(적극적 조치)에서 “시 소속기관”과 “투자기관”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.

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

제22조(적극적 조치) 시장·시 소속기관(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. 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 및 투자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%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)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‘투자기관’의 법적 근거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3)에 따르며, 현행 조례에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

3) 지방공기업법 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- | | |
|---|------------|
| 1. 수도사업(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) | 2. 공업용수도사업 |
| 3.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) | 4. 자동차운송사업 |
| 5. 지방도로사업(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) | 6. 하수도사업 |
| 7. 주택사업 | 8. 토지개발사업 |
| 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| |
| 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| |
| 1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·이용·보급에 필요한 사업 | |
| 12.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| |

시가 자본금의 50%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이라 정의하고 있음.

- 2025년 7월 22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(<https://www.data.go.kr>)의 지방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,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은 총 8개소임.⁴⁾
 -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은 다시 직접경영(지방직영기업)⁵⁾과 간접경영(지방공사·공단)⁶⁾으로 구분되는데, 서울시 직영 기관인 서울특별시상수도과 서울특별시하수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% 이상 출자한 공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직접경영(지방직영기업) 기관임.
- 현행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‘시 소속기관’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합의제 행정 기관을 모두 포함함. 이에 따라, 서울시의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상수도과 서울특별시 하수도는 ‘시 소속기

4)

| 연번 | 설립 자치단체명 | 기관유형 | 기관상세유형 | 기관명 |
|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| 직영기업 | 상수도 | 서울특별시상수도 |
| 2 | 서울특별시 | 직영기업 | 하수도 | 서울특별시하수도 |
| 3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사 | 도시철도공사 | 서울교통공사 |
| 4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사 | 도시개발공사 | 서울주택도시공사 |
| 5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사 | 기타공사 | 서울에너지공사 |
| 6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사 | 기타공사 |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|
| 7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단 | 시설관리공단 | 서울물재생시설공단 |
| 8 | 서울특별시 | 지방공단 | 시설관리공단 | 서울시설공단 |

5) [클린아이소개 > 지방공공기관 현황 > 지방공기업이란](#) | [클린아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](#) 직접경영(지방직영기업)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,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·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(상수도, 하수도, 공영개발 등)

6) [클린아이소개 > 지방공공기관 현황 > 지방공기업이란](#) | [클린아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](#) 간접경영(지방공사·공단)은 지방자치단체가 50%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.

관’에 해당하며, 나머지 6개 지방공사 및 공단은 ‘투자기관’으로 분류됨.

지방자치법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7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따라서,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에서 ‘소속기관’은 제22조의 ‘시 소속기관’이하 “소속기관”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, 개정 조문을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기관의 장’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규정이 제20조와 제22조에 각각 나뉘어 정의되어 있는 바, 이에 대한 조문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부서 의견 : 수정가결

- 집행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에서는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.
- 다만, 출연기관까지 폭넓게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,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'을 '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'으로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규정된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 보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(모성·부성의 권리 보장) 제1항에 “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고 규정된 조문의 ‘국가기관 등’을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

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, 신설 조문에서 조례상 모성·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,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인 ‘출연기간’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25조의 2를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·출연 기관의 장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신설 조문에서 명시한 모성·부성 권리보장의 주체인 ‘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’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0조의 근거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되었으므로, 관련 내용을 변경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